



시 보



제1464호 2020. 10. 26.(월)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

공 고

-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공고----- 3
-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5

회람							
----	--	--	--	--	--	--	--

목포시 고시 제 2020-286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썰나루길 138	2020.10.26.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목포시 공고 제2020-1612호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공고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2020.7.1.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후 유달산 주변 일부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됨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계절음식점 영업 제외 구역을 신설하고 기존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절음식점 영업 제외구역” 대상을 명확히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역 내 토지는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영업구역에서 제외한다.

3. 일부개정 고시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결과 : 비해당
-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비해당
-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비해당

7. 예산상황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8. 행정예고 기간 : 2020. 10. 26. ~ 2020. 11. 16.(21일간)

9. 의견제출

- 이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보건위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E-mail, 직접방문 제출

- 주소 : 우)58714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 45번길 5 목포시보건소
- 전화 061)270-8940, 팩스 061)270-3597, 이메일 lyilyj77@korea.kr

목포시 고시 제 호

목포시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계절음식점 영업 제외구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역 내 토지는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영업
구역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고시」에 의해 2020
년 9월 30일까지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구역 중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은 이 개정 고시에 의해 영업신고가 가능한
구역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계절음식점 영업 제외구역)</u> <u>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u> <u>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역 내</u> <u>토지는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할</u> <u>수 있는 영업구역에서 제외한다.</u>

관 련 법 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6. 2. 4.>

제57조(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 별표 17과 같다<개정 2016.2.4.>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바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업을 하려는 경우
-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차 · 자동차 ·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 · 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 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 (3)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마)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삭제 <2012.12.17>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 가.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삭제 <2011.8.19>
- 마. 삭제 <2011.8.19>
- 바. 제과점영업자가 별표 14 제8호가목2)라)(5)에 따라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사.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자.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동물·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홍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홍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2)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4)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6)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파. 유홍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홍접객원만 해당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하. 손님을 피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1) 일부항목 검사: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러.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 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머. 식품접객업자는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버.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 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저.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 “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커.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터.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 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는 신고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 음식판매자동차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포시 공고 제2020-1631호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6.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경제제도개선과-1869(2019.8.2.)호)]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운영지침 사항에 따라 신고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보완하여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부패 신고 대상인 ‘공무원’의 정의 규정 정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개정
- ‘공무원 등’의 정의를 신설하여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 될 수 있도록 규정

나. 부정부패 신고기한 정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조항 신설

다. 신고처리 절차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운영지침 사항

- 신고접수 처리기한 및 신고내용 조사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처리절차 보완

라.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추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운영지침 사항

- 포상금 지급제외 사유 상세 명기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사실확인이 불가하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 되는 사항 추가

3. 조례개정안 : 붙임**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5.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8. 입법예고 기간 : 2020. 10. 26. ~ 2020. 11. 16.(21일간)****9.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16일까지 목포시장(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감사실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1),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감사실(☎ 061-270-3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의**” 을 “**공무원 등의**” 으로, “**공무원의**” 을 “**공무원 등의**”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무원**” 을 “**공무원 등**”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무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분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과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을 “**공무원 등**” 으로 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날**” 을 “**날로**”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본문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를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기관에서 보상·포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별표의 “제7조 관련”을 “제8조 관련”으로, “수하거나”를 “수수하거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포상금 지급 기준
1	조례 제3조제1호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	-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제공액의 10배 이내
2	조례 제3조제2호 관련(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3	조례 제3조제3호 관련(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신고 : 100 만원

※ 지급 상한액은 100백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u>공무원의</u>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u>공무원의</u>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공무원 등의</u> ----- ----- ----- <u>공무원 등의</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부정부패”라 함은 <u>공무원이</u>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u>공무원 등</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3. “ <u>공무원 등</u>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

체의 임직원

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지급대상)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과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부패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 3. (생략)

제3조의2(신고기한) 신고는 부정부패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3조(지급대상) -----
공무원 등-----

-----.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신고기한) ① -----
----- 날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 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 설>

제6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

신고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제7조 (생 략)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2.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
-----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

-----.

1. (현행과 같음)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5. (현행 제2호와 같음)

6. 다른 기관에서 보상·포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7.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0조(환수) ① -----

----- 제9조-----

-----.

② (생 략)

제10조 (생 략)[별 표]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포상금 지급 기준
1	• 조례 제3조제1호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	•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제공액의 10배 이내
2	• 조례 제3조제2호 관련(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서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3	• 조례 제3조제3호 관련(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신고 : 100 만원

※ 지급 상한액은 100백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별 표]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포상금 지급 기준
1	• 조례 제3조제1호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	•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제공액의 10배 이내
2	• 조례 제3조제2호 관련(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서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3	• 조례 제3조제3호 관련(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신고 : 100 만원

※ 지급 상한액은 100백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